

2.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특성화사업 추진 및 2015학년도 입시환경 분석을 통한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한 제 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개정
-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,선행학습 유발 유무 평가,영양평가 결과 공개 및 차년도 입시전형에 반영처리
- 폐과학생들이 복학 후, 원소속학과로 졸업하기 원하는 경우 당초 입학한 학과로 졸업가능토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학과 통폐합 : (호텔관광과(60), 의료관광코디과(30)) -> 호텔관광과(70), (미용피부관리과(80), 허브테라피향장과(30)) -> 미용피부테라피과(95)
- 2) 학과명칭 변경 : 특전부사관과 → 정보특전부사관과
- 3) 정원조정 :식품영양과(60), 사회복지과(100), 항공서비스과(33), 의무부사관과(70), 정보특전부사관과(30)
- 4) 학과신설 : 아동보육과(30)
- 5) 학부편제 변경
- 6) 매년 입시가 마무리된 후 대입고사(면접·구술고사, 논술, 필답고사 등)를 실시한 경우,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실시
- 7)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결과 3월말까지 홈페이지 공개
- 8) 폐과학생들의 원소속학과로의 졸업을 요구하는 경우, 이에 대해 당초 입학한 학과로 제 증명서 발급 및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주요토의과제 : 학과별 정원 조정사항 검토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고등교육법 ,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
- 2) 합 의 : 해당학과 사전 정보 공유 및 의견 개진 완료
- 3)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현행						개정(안)					
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						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(현행과 같음)					
모집단위(학과명)	대계열분류	입학정원			수업연한	모집단위(학과명)	대계열분류	입학정원			수업연한
		주	야	계				주	야	계	
특전부사관과	공학	40		40	2	정보특전부사관과	공학	30		30	2
전투부사관과	공학	40		40	2	전투부사관과	공학	40		40	2
임상병리과	자연과학	120		120	3	임상병리과	자연과학	120		120	3
물리치료과	자연과학	80		80	3	물리치료과	자연과학	80		80	3
방사선과	자연과학	80		80	3	방사선과	자연과학	80		80	3
치기공과	자연과학	80		80	3	치기공과	자연과학	80		80	3
식품영양과	자연과학	50		50	2	식품영양과	자연과학	60		60	2
치위생과	자연과학	120		120	3	치위생과	자연과학	120		120	3
의무행정과	자연과학	80		80	3	의무행정과	자연과학	80		80	3
간호학과	자연과학	140		140	4	간호학과	자연과학	140		140	4
안경광학과	자연과학	79		79	3	안경광학과	자연과학	79		79	3
미용피부관리과	자연과학	80		80	2	미용피부테라피과	자연과학	95		95	2
의무부사관과	자연과학	80		80	2	의무부사관과	자연과학	70		70	2
허브테라피향장과	자연과학	30		30	2						
외식조리과	자연과학	90		90	2	외식조리과	자연과학	90		90	2
유아교육과	인문사회	96		96	3	유아교육과	인문사회	96		96	3
사회복지과	인문사회	130	27	157	2	사회복지과	인문사회	100	27	127	2
호텔관광과	인문사회	60		60	2	호텔관광과	인문사회	70		70	2
의료관광코디과	인문사회	30		30	2						
항공서비스과	인문사회	40		40	2	항공서비스과	인문사회	33		33	2
						아동보육과	인문사회	30		30	2
주얼리디자인과	예체능	30		30	2	주얼리디자인과	예체능	30		30	2
합계		1,575	27	1,602		합계		1,523	27	1,550	
< 신설 >						제20조의2 (대입선행학습 영향평가) ① 대입고사(면접·구술고사, 논술 등 필답고사 등)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					

현행	개정 (안)
부칙 (원광학원 총무팀 제77호 2013531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 제1조 ~ 제3조 (생략) <u><신 설></u>	부칙 (원광학원 총무팀 제77호 2013531) ----- ----- -----. 제1조 ~3조 (현행과 같음) <u>제4조 (학위명) 위 각조에도 불구하고 학생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졸업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u>
	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과개편 및 변경) ① 학과개편 및 통폐합, 학과신설 및 정원조정에 관한 내용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) ① 허브테라피향장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미용피부테라피과 소속으로 한다. ②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호텔관광과 소속으로 한다. ③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소속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년제 기타 학과로 전과 할 수 있다. 제4조(경과조치) 제20조의2(대입선행학습 영향평가) 각 항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